##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79

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김성회·고민정·민병덕

백승아 · 서미화 · 안태준

윤종군 • 이기헌 • 이인영

이재관 • 진선미 • 한창민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여 헌법에 보 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.

그러나 공무원도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교원노조가 여타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「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에 맞추어 관련조항을 정비함(안 제3조 삭제 및 제1조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6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#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국가공무원법」 제66조제1항 및 「사립학교법」 제55조에도 불구하고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"을 "「사립학교법」 제55조에도 불구하고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"으로 한다. 제3조를 삭제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조(목적) 이 법은 <u>「국가공무</u>	제1조(목적)「사립학교		
원법」 제66조제1항 및 「사립	법」 제55조에도 불구하고「노		
학교법」 제55조에도 불구하고	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		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			
법」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			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			
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			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			
법」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			
목적으로 한다.			
제3조(정치활동의 금지) 교원의	<u>&lt;</u> 삭 제>		
노동조합(이하 "노동조합"이라			
한다)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			
여서는 아니 된다.			